

타이틀 14 공공유틸리티**14.12장 수도요금과 요금****14.12.010 보증금 .**

수도서비스 신청은 이 장에서 규정한 금액을 미국 법정화폐 현금으로 예금해야하며, 신청인이 시에 크레딧을 쌓아서 보증금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이다. 최소한 일년동안 시에 매월 수도요금을 제때 납부하였으면 시에 크레딧을 쌓은 것으로 간주한다. 최소한 일년동안 시에 매월 수도요금을 제때 납부하고 수도서비스를 공급받는 건물주가 보증금을 요구하면 돌려받게 된다. 이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한 모든 이는 계정을 닫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 하지만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미납 고지서 요금을 보증금에서 제한다. 발행한 영수증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최종 고지서를 발급하고 일년이 지나서 만료될 때, 그리고 그러한 계정의 기록상 보증금 영수증 보유자에게 보증금 회수 요청서를 두 번 주고 난 후, 보증금이나 잔액을 몰수하게 되고, 같은 금액을 수도 운영기금으로 이체한다. (이전 법령 § 7312)

**14.12.020 최소 보증금 .**

수도서비스 신청서를 받은 후 질문의 수도계량기의 크기에 따라 최소 보증금은 시의회 결의안으로 정해진 금액으로 내야한다. 또한 한 개 이상의 주거지, 아파트, 상점, 사무실, 혹은 유사한 부가건물의 유닛이 계량기 한 개에 연결되어 있으면 전부 시의회 결의안으로 정한 유닛 당 추가 서비스 보증금을 요구한다. (조례안 1849 § 3, 1993; 조례안 1784 § 1, 1989; 조례안 1639 § 1, 1985; 조례안 1394 § 1, 1975; 이전 법령 § 7313)

**14.12.030 요금- 요금**

본 조항과 후속 조항에 규정된 요금과 요금은 고정이며 확정되고 소비자가 납부해야 하며 수도국이 수급해야 한다. (이전 법령 § 7314)

**14.12.040 급수간선으로 받는 서비스.**

시의회 의 소견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비현실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건물은 근접하거나 건물 앞면의 거리나 통행로에 설치된 급수간선으로부터 수도를 공급받아야 한다. 만일 급수간선이 없으면, 서비스를 받는 조건으로 기존의 급수간선을 연장해야한다 (기존 법령 § 7314(A))

**14.12.050 기존 급수간선과 연결.**

만일 25피트 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소로부터 기존의 급수간선이 위치한 경우, 급수간선에 이미 연결되지 않은 건물은 본 법규의 14.12.100조항에서 14.12.230조항에 따라서 본 조항의 (2)관에 규정된 수도 급수간선에 대한 변제금을 납부한 후 서비스연결 설치요금을 납부한 후 급수간선으로 수도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다.

(1) 변제금 계산. 수도 급수간선 변제금을 납부해야만 하는 경우, 연결하려는 지역이 시 기술자와 시 행정관이 급수간선의 공사로 이익이 발생한다고 판정한 토지 전체구역의 퍼센트와 동일한 급수간선 공사비의 퍼센트이다. 이에 사용된 “공사비”는 인건비, 자재비, 서비스, 엔지니어링, 간접비 등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하나 시 기술자와 시 행정관이 정한 금액인 그에 따른 누적된 이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2) 요금 처리. 수도 급수간선 변제요금은 경리부장에게 납부하고 14.12.060(4)항에 규정된 바에 의해 처리할 것이다. (조례안. 1348 § 1, 1973; 이전 법규 § 7314(B))

#### 14.12.060 연장-지출-공사종류.

수도서비스의 공급을 위해 급수간선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25피트 이상 급수간선을 연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신청인이 본인 부담으로 연장한다. 연장은 가장 가깝고 적당한 수도 급수간선으로부터 근접한 곳이나 혹은 앞면에 공급받는 건물의 일부분 길이나 통행로 전체길으로 연장한다.

연장은 수도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요건에 따라서 시 기술자와 시 행정관이 결정하여 즉시 혹은 궁극적으로 공급하게 될 토지의 배급 급수간선 요건에 부합하고 시 기술자가 허가한 적절한 용량의 연성철 파이프나 동일한 것으로 한다.

##### (1) 신청서-보증금-요금.

(a) 수도 급수간선이 없는 건물에 공급하기 위한 수도 급수간선 연장 신청서와, 시 행정관과 시 기술자가 동일한 것을 만드는 비용으로 충분하다고 산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받고 난 후, 시 행정관과 시 기술자는 연장한다. 연장으로 혜택을 받을 건물을 신청서에서 설명해야 한다. 신청인은 시검사가 승인한 방식으로 시가 승인한 계획에 따른 연장 설치를 동의하고 스스로 보증한다.

(b) 연장이 완공되고 실제 비용을 정하고 나면, 비용을 초과하여 보증금에서 남은 부분은 환불해야 한다. 보증금이 불충분하면, 신청인이 시의 부족액에 대한 책임을 진다.

(c) 본 법령의 14.12.100항에서 14.12.230항에 규정된 서비스 연결 설치비는 본문에서 규정한 납부요금에 추가적이다.

(2) 개인적으로 자금을 조달한 공사비용의 변제. 만일 1958년 9월 1일 이후 수도 급수간선 연장을 일반자금, 수도운용지방채, 혹은 특정건물의 혜택을 위해 선거로 승인한 채권발행으로 생긴 자금을 조달하여 시에 비용이 들지않고 설치하거나 설치한 경우, 시가 후속으로 받은 수도 급수간선 요금은 연장설치의 완공일로부터 15년 내에 혜택을 받은 지역의 건물에서 후속 연결을 위해 연장공사비를 납부한 사람이나 후계자나 수탁자에게 환불한다. 원래 연장한 곳의 혜택을 위해 건물에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수도 급수간선 변제요금으로 납부해야 했던 금액을 실제 연장공사비에서 빼고 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환급금을 정한다.

(3) 비용 결정. 본문에서 사용된 “비용”이란 인건비, 자재비, 서비스, 엔지니어링, 간접비 등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하나 시 기술자와 시 행정관이 정한 금액인 그에 따른 누적된 이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4) 경리부장 의무. 본문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도 급수간선 변제금의 영수증은 경리부장이 시에 납부하거나 유자격 개인에게 환불할 것을 정한다. 시에 납부할 수령액은 전부 수도운영자금에 예치해야 한다. 개인에게 환불할 영수증은 신탁자금에 예금하고 경리부장은 유자격 개인 혹은 개인들에게 연2회 이상 지급한다. (조례안. 1970 § 3, 2000; 이전 법규 § 73 I 4(C))

#### 14.12.070 추가 공급품 설치비.

주요 수도 급수간선 연장 신청을 할 때, 이에 규정된 기타 요금에 추가로 신청인은 “추가 공급품 설치비”를 납부해야할 수도 있다. 만일 신청인의 수도와 화재 공급수요에 부합하기 위해 기존 수도시스템 우물, 저장탱크, 승압소, 혹은 변속 급수간선의 확장이 필수적이면, 추가요금이 부과된다. 1.10장에 의한 항소에 따라 시 기술자가 확장의 필요성과 요금을 정한다. 요금은 인건비, 자재비, 서비스, 엔지니어링, 행정비, 기타 간접비 등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하고 수도운영기금에 예치해야 한다. (조례안. 2132 § 1, 2016; 조례안. 1498 § 1, 1979; 조례안. 1348 § 2, 1973; 이전 법규 § 7314(O))

**14.12.080 양수장, 급수장 장비-설치.**

(a) 새롭게 분할한 구역의 건물에 공급하기 위해 수도 급수간선 연장이 필요하다면, 14.12.060항과 14.12.070항의 조항이 적용된다. 만일 건물이나 건물 일부분에 공급할 수 있는 수도 급수간선이 기존에 있으면, 14.12.050항과 14.12.070항으로 규정된 수도 급수간선 요금은 분할구역의 사람이 납부한다.

(b) 시 기술자와 시 행정관이 판단하여 새로운 분할구역의 서비스를 위해 적당한 수압을 정하고 유지하기 위한 양수장, 급수장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면, 신청인은 설비용 영구적 장소를 시에 양도하고 부속구조물을 수도 급수간선 연장에 연결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부속구조물을 공급하고 설치하는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c) 만일 신청인이 영구적 장소를 즉시 제공하지 못하면 제공할 수 있을 때까지 시에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임시 급수장, 승압소, 부속구조물과 임시장소를 영구 설치하기 위한 적절한 보증과 약정을 하고 제공해야 한다.

(d) 시 기술자와 시 행정관이 판단하여 새로운 분할구역에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적당한 수압을 정하고 유지하기 위해 양수장, 급수장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면, 신청인은 공사비를 자금 조달해야 한다. 설치하여 제안된 분할구역보다 더 넓은 구역에 서비스를 공급할 때마다 14.12.060항과 14.12.070항에 규정된 동일한 방식으로 변제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전 법규 § 7314(E))

**14.12.100 계량된 수도- 시 내부.**

(a) 수도요금을 계산할 때마다, 청구주기에서 100 큐빅 피트보다 적은 수도의 사용에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보통 공휴일과 주말을 제외하고 약 30일마다 수도 계량기를 검침한다. 고객이 바뀌거나 계량기 크기가 변하는 것을 포함하나 국한되지 않는 상황을 국장이나 대리인이 판정하여 합리적인 목적으로 계량기를 검침해야 한다. 만일 계량기를 검침하지 못하거나 계량기가 등록되지 않거나 잘못 등록되었으면, 수도 사용량은 건물의 평균 소비량이나 비슷한 기간에 상당히 비슷한 건물을 토대로 산정할 것이다.

(b) 온전한 청구주기보다 적은 월 서비스 요금의 기본요금의 계산은 일일 효율로 정한다. 일일 효율은 월 효율을 30으로 나누어서 정하게 된다. 일일 효율은 소수점 4자리까지 반올림한다. 만일 고객이 서비스를 중단하고 계정을 닫으면, 서비스 요금은 마지막 청구일로부터 계정 해지일까지 해당 일일 효율로 계산한다. 2개월보다 적은 총 기간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단기 유틸리티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날수 계산하지 않게 된다. 고객에게 2개월 서비스 요금을 부과한다. (조례안. 2175 § 2, 2020; 조례안. 1849 § 4, 1993; 조례안. 1821 § 1, 1991; 조례안. 1810 § 1, 1990; 조례안. 1784 § 1, 1989; 조례안. 1737 § 1, 1988; 조례안. 1639 § 2, 1985; 조례안. 1621 § 1, 1984; 조례안. 1537 § 1, 1980; 조례안. 1502 § 1, 1979; 조례안. 1446 § 1, 1977; 조례안. 1394 § 1, 1975; 조례안. 1342 § 1, 1973; 조례안. 1192 § 2, 1967; 이전 법규§ 7315)

**14.12.110 설치- 시 내부.**

수도서비스 설치나 서비스 확장을 위해, 자재비와 인건비에 대한 요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감독과 간접운동을 위한 자재비와 인건비의 30퍼센트 요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신청할 때 총 추산비용의 75퍼센트를 납부해야 한다. 설치를 완공하고 10일 내에 잔액을 납부해야 한다. (조례안. 1502 § 1, 1979; 조례안. 1446 § 1, 1977; 조례안. 1394 § 1, 1975; 조례안. 1192 § 2, 1967; prior code§ 7316)

**14.12.115 계량 수도서비스 부담금.**

(a) 본 법령에 의해 시의회 결의안으로 정한 보증금과 요금에 추가로 설치 전 수도 계량기 사용비를 시의회 결의안으로 정한 금액으로 계량수도서비스 부담금으로 납부한다.

(b) 만일 서비스가 확장되면,이 조항에 의해 계량기 요금을 이전에 납부한 금액으로 줄여도 된다. (조례안. 1849 § 5, 1993; 조례안. 1821 § 1, 1991; 조례안. 1810 § 1, 1990; 조례안. 1784 § 1, 1989; 조례안.1736 § 1, 1988; 조례안. 1639 § 4, 1985; 조례안. 1626 § 1, 1984).

### 14.12.120 계량수도- 시 외부.

(a) 사용하기 위해 시의 경계 외부에서 판매된 계량 수도 요율과 요금은 시의회 결의안으로 정한다.

(b) 서비스기간이 한달보다 적으면, 요금은 시의회 결의안으로 정한 하루 단위 혹은 월 단위 중 적은 것으로 날수를 계산한다 (조례안. 1849 § 5, 1993; 조례안. 1821 § 1, 1991; 조례안. 1810 § 1, 1990; 조례안. 1784 § 1, 1989; 조례안. 1737 § 1, 1988; 조례안. 1639 § 3, 1985; 조례안. 1621 § 1, 1984; 조례안. 1537 § 1, 1980; 조례안. 1502 § 1, 1979; 조례안. 1446 § I, 1977; 조례안. 1394 § 1, 1975; 이전 법규§ 7317)

### 14.12.130 설치 -시 외부.

수도서비스의 설치를 위해, 재료비와 인건비를 정한다. 그것에 추가로 감독과 간접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재료비의 30퍼센트 요금을 추가한다. 정해진 총비용의 75퍼센트는 신청시 납부한다. (조례안. 1502 § 1, 1979; 조례안. 1446 § 1, 1977; 조례안. 1394 § 1, 1975; 조례안. 1192 § 2, 1967; 이전 법규§ 7318)

### 14.12.140 소화전 -사용 허가증.

계량기를 제외한 시 소화전, 수직관, 혹은 수도 급수간선에서수도 급수간선에서 물을 끌어오거나 사용하면 안된다 :

(a) 소화전으로 수도 사용 허가증과 계량기는 소화전 사용으로 발생한 수도비용을 충당하고 시 장비나 시설에 발생한 손상을 충당하기 위해 시의회 결의안으로 정해진 계량기 설치비와 보증금을 받은 후 수도국이 발급하게 된다.

(b) 수도 요율은 가정요율과 동일하게 된다.

(c) 허가증은 수도를 끌어오는 작업장에 위치하고 시직원이 점검할 때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d) 수도트럭을 사용한 경우, 트럭 면허증 번호와 장비 번호가 허가증에 나오게 된다. 만일 트럭 한 대 이상이 사용되었으면, 트럭마다 허가증이 발급되고 그 트럭에만 유효하며 시에 계량기를 반납할 때 만기된다.

(e) 허가증에 정해진 작업이 끝날 때 계량기를 전부 반납해야 한다. (조례안. 1970 § 4, 2000; 조례안. 1498 § 1, 1979; 이전 법규§ 7319)

### 14.12.160 소화전 서비스 요금.

(a) 일가구와 이가구 주택과 조립주택 화재서비스는 가정용 계량기서비스와 합쳐질 수도 있다. 이런 설치는 몬트레이 파크 수도국과 소방국의 요건과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b) 모든 화재서비스는 적합한 크기의 계량기 검지기와 적당한 크기의 역류방지기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화재서비스는 별도 설치해야 하며, 가정용 서비스와 서로 연결되면 안되고, 2 인치보다 커야한다.

(c) 시 경계 내부나 외부에서 화재서비스의 월 서비스요금과 각각 계량기 크기는 시의회 결의안으로 결정한다. (조례안. 1970 § 4, 2000; 조례안. 1849 § 6, 1993; 조례안. 1821 § 1, 1991; 조례안. 1810 § 1, 1990; 조례안. 1784 § 1, 1989; 조례안. 1737 § 1, 1988; 조례안. 1639 § 5, 1985; 조례안. 1621 § I, 1984; 조례안. 1537 § 1, 1980; 조례안. 1502 § 1, 1979; 조례안. 1446 § 1, 1977; 조례안. 1394 § 1, 1975; 조례안. 1192 § 2, 1967; 이전 법규§ 7321)

### 14.12.162 결합된 주거용 가정서비스- 화재 스프링클러 월 서비스 요금 .

(a) 한 구획에서 2유닛 이하인 주거단지나 조립주택의 결합된 화재 스프링클러/가정용 시스템을 1인치

수도계량기로 공급받는 수도서비스는 결합된 화재서비스 시스템이 없는  $\frac{3}{4}$  인치 계량기와 동일한 월 서비스 요금이 적용될 것이다.

(b) 한 구획에서 2유닛 이하인 주거단지나 조립주택의 결합된 화재 스프링쿨러/가정용 시스템을  $1\frac{1}{2}$  인치 수도계량기로 공급받는 수도서비스는 결합된 화재서비스 시스템이 없는 1 인치 계량기와 동일한 월 서비스 요금이 적용될 것이다 (조례안. 1970 § 4, 2000)

#### 14.12.165 소방서비스 부담금.

(a) 조항에서 규정한 보증금과 요금에 추가로, 소방서비스 부담금을 시의회 결의안으로 정한 금액으로 부과한다.

(1) 한 구획에서 2유닛 이하인 주거단지나 조립주택의 결합된 화재 스프링쿨러/가정용 시스템을 1인치 수도계량기로 공급받는 수도서비스는 결합된 화재서비스 시스템이 없는  $\frac{3}{4}$  인치 계량기와 동일한 소방서비스 부담금이 적용될 것이다.

(2) 한 구획에서 2유닛 이하인 주거단지나 조립주택의 결합된 화재 스프링쿨러/가정용 시스템을  $1\frac{1}{2}$  인치 수도계량기로 공급받는 수도서비스는 결합된 화재서비스 시스템이 없는 1 인치 계량기와 동일한 소방서비스 부담금이 적용될 것이다. (조례안. 1970 § 4, 2000; 조례안. 1849 § 6, 1993; 조례안. 1821 § 1, 1991; 조례안. 1784 § 1, 1989; 조례안. 1736 § 1, 1988; 조례안. 1639 § 6, 1985; 조례안. 1626 § 1, 1984)

#### 14.12.170 구입한 수도.

시립 서비스가 없는 시 구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시정부가 다른 회사에서 구입한 수도의 요율은 수도를 구입한 회사가 부과한 요금과 동일해야 한다 (이전 법규 § 7322)

#### 14.12.180 추가 요금.

한 개 이상 주택, 아파트, 상가, 사무실, 혹은 비슷한 부가건물이 한 개의 계량기에 연결된 경우, 각각 추가유닛에 대해 수도서비스 요금을 추가요금으로 알려지고 시의회 결의안으로 정한 요금으로 부과한다. (조례안. 1849 § 7, 1993; 조례안. 1821 § 1, 1991; 조례안. 1810 § 1, 1990; 조례안. 1784 § 1, 1989; 조례안. 1737 § 1, 1988; 조례안.

1621 § 1, 1984; 조례안. 1537 § 1, 1980; 조례안. 1502 § 1, 1979; 조례안. 1446 § 1, 1977; 조례안. 1394 § 1, 1975; 조례안. 1342 § 1, 1973; 조례안. 1192 § 2, 1967; 이전 법규 § 7323)

#### 14.12.185 라이프라인 수도요금.

(a) 일년 단위로, 이 조항에 의해 할인요율을 받을 자격이 되는 가정용 수도 고객에게 라이프라인 요율을 사용하게 하는 여부를 결의안으로 정한다. 이 조항에서 어떠한 내용도 이 조항으로 규정한 라이프라인 요율을 받을 자격이 되는 이들에게 재산권을 만들어 주거나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다. 다만, 라이프라인 요율을 정하는 것은 무엇보다 시의 수도운영자금으로 얻은 이자수익 예상액에 의존하여 시의회가 재량권으로 정한다

(b) 이 조항의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고객은 이 조항에서 규정한 주거용 월 요금과 요금에서 시의회 결의안으로 정한 기본금을 빼고 난 것과 동일한 할인요율을 납부해도 되지만 의무는 아니다. 기본금을 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해, 시의회는 다음사항을 생각해봐야 한다.

- (1) 시의 수도운영자금을 위한 시 예산으로 예산된 이자수익
- (2) 이 조항으로 규정된 할인요율로 납부할 자격이 되는 고객 숫자
- (3) 이 조항으로 규정된 주거용 수도요금과 요금

(c) 자격이 되려면, 가정용 주거수도 고객은 다음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최소한 62세

(2) 장애인이고, 고객이 의료적으로 판정된 신체적이거나 정신적 질병의 이유로 돈버는 활동을 상당히 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거나 혹은 오래 지속되고 무기한 기간의 예상을 증명한다.

(3) 미국주택도시개발국이 제정하고 수정한 1937년 미국주택법의 섹션8 주택프로그램에 의해서 몬트레이 파크시에서 고객이 거주한 가족구성원의 합친 수정된 총소득이 (캘리포니아 개인소득세법의 목적으로 사용됨) 2인 가족의 “매우 적은 소득” 한도에 따라 전년 4월 1일에 유효한 숫자보다 적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매 회계연도마다, 미국주택도시개발국이 제정하고 수정한 1937년 미국주택법의 섹션8 주택프로그램에 의해서 몬트레이 파크시에서 고객이 거주한 가족구성원의 합친 수정된 총소득이 (캘리포니아 개인소득세법의 목적으로 사용됨) 2인 가족의 “매우 적은 소득” 한도에 따라 전년 4월 1일에 유효한 숫자를 관리국장이나 대리인이, 전년도 수정 총소득 한도로써 정하고 사용할 것을 지시받는다.

(4) 최근 캘리포니아 공익기업 위원회 결정으로 규정되고 공익기업 739.1항과 739.2항으로 규정된 캘리포니아 에너지 대체요금(“케어”) 프로그램에 자격이 되는 참가자이다. 혹은 공익기업법 871항에 의해 규정된 캘리포니아 유니버설 전화서비스 프로그램(“라이프라인”)에 자격이 되는 참가자이다.

(d) 라이프라인 요금 신청서는 관리국장이나 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리국장은 신청서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적당하다고 여기는 추가 증거를 요구할 수도 있다. 가구 당 한 명만 허가받는다. 시는 지속적으로 자격이 있다는 증거의 제출을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다.

(e) 라이프라인 요금은 승인일로부터 다음 청구주기에 처음으로 나오게 된다. (조례안. 2174 § I, 2020; 조례안. 1849 § 7, 1993; 조례안. 1821 § 1, 1991)

#### 14.12.190 잘못된 계량기 기록.

만일 어떤 기간동안, 계량기가 기록하지 못하거나 잘못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으면, 계량기가 기록하지 못하거나 잘못 기록한 기간에 대해 계량기의 최소요금미 소비자에게 부과된다. (이전 법규 § 7324)

#### 14.12.200 빈 집.

수도가 공급되는 집, 혹은 기타 건물, 혹은 건물이 비어있게 되면, 수도를 사용하거나 안하거나 주인에게 일반요금을 부과하고 수급해야하며, 예외는 수도국이 서비스중단을 요청하는 경우이다. (이전 법규 § 7325)

#### 14.12.210 요금 분쟁- 국장 조사.

(a) 관리국장은 불만신고를 수정하고, 고객이 납부하는 수도요금에 대한 분쟁이 일어나면, 시의회의 승인에 따라 국장이 동일하게 정하게 된다.

(b) 국장은 고지서나 요청을 받고 30일 내에 요금을 분쟁하는 고객의 계정을 재조사하게 된다. 이 조항의 목적상, 고지서를 우편으로 보내고 5일 이후 고객이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때 항의하거나 조사요청을 하면 국장이나 대리인이 재조사하고 고객에게 판결문을 보내게 된다.

(c) 만일 재조사 이후 오류가 발견되면, 시는 오류를 즉시 수정하고, 만일 시의 단독재량으로 고객의 계정에 크레딧으로 돌려주거나 고객에게 환불해주게 되며, 고객이 다른 약정을 요청하고 국장이나 대리인이 허가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소급하여 수정할 수 있는 최대기간은 국장, 대리인이 규정한 형태와 방식으로 시에서 오류를 문서로 통보받은 처음 날짜로부터 12개월 전이다.

(d) 이 조항에 의해 제때 조사를 요청하였으나 불리한 판결을 받은 고객은 시가 판결문을 우편으로 보낸 날짜로부터 10일 내에 시 서기에게 항소문을 제출하여 시 행정관에게 항소할 수 있다. 시 행정관의 판결은 시의회에 항소할 수 있다. (조례안. 2175 § 3, 2020; 조례안. 1498 § 1, 1979; 이전 법규 § 7326)

### 14.12.220 건물 손상.

시의 재산인 소화전, 계량기, 파이프, 기타 기구가 고장나거나 망가지면, 손상과 손실에 책임있는 자가 수도 손실에 추가적으로 총 손해배상비과 인건비를 납부해야 한다. 수도 손실비용은 시의회 결의안으로 규정된 요율로 한다. (조례안. 1849 § 8, 1993; 조례안. 1821 § 1, 1991; 조례안. 1810 § 1, 1990; 조례안. 1784 § 1, 1989; 조례안. 1737 § 1, 1988; 조례안. 1621 § 1, 1984; 조례안. 1537 § 1, 1980; 조례안. 1502 § 1, 1979; 조례안. 1446 § 1, 1977; 조례안. 1394 § 1, 1975; 이전 법규§ 7327)

### 14.12.230 불필요한 시 지출.

건물공사로 수도가 필요하고 계량기가 걸핏하면 망가지고, 따라서 시에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 계량기는 설치에서 제외하고 수도요금은 그러한 규모 서비스의 최소금액으로 한다. 공사가 완공되면 적당한 크기의 계량기를 설치하고 요금은 계량 서비스 규정을 따른다. (이전 법규 § 7328)

### 14.12.240 청구- 체납- 수도 단수.

(a) 수도국은 한달이나 두달마다 모든 요금에 대한 고지서를 발급하게 된다. 이 법령의 6.08.040항에서 규정한 고품폐기물수거 고지서와 함께 발급된다.

(b) 발급된 고지서는 발급된 날짜에 시청에 납부해야 하며, 고지일로부터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고지금액은 체납이 된다. 만일 체납일이 지나고 요금을 받지 않았으면, 10달러 혹은 첫번째 체납 고지서의 10퍼센트 중 더 적은 것을 추가로 고지서 금액과 납부해야 하고, 고객이 국장이나 대리인이 허가한 상환일정을 맺은 경우는 예외이다.

(c) 고지서가 체납이면,본 조항에 요약된 통지서와 서비스 요건에 따라 계정에 이름이 나온 고객에게 체납 통지서와 이 조항의 복사본을 주어야 한다.

(d) 고지일로부터 60일 이후 체납고지서를 납부하기 위한 요금을 받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납부약정을 맺지 않은 경우, 서비스는 중단될 것이다. 만일 상기 파악된 구체적인 시간 내에 요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자금으로 부도난 수표, 신용카드 결제거부, 기타 비슷한 결제 문제를 포함하나 국한되지 않고 미납 고지서나 요금의 미납과 관련된 기타 이유로 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조사하고 시의회가 정한 금액으로 서비스 요금이 부과되며 서비스가 중단될 때마다 납부해야 한다. 시는 체납을 이유로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혹은 시의 사무소가 근무하지 않는 날에 공익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e) 공공 유틸리티법 10009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유틸리티 서비스가 끊어지는 경우, 필수요금을 (제한없이 연체료, 벌금, 보증금, 서비스요금 등) 완납할 때까지 서비스는 복구되지 않는다. 서비스는 일반근무시간에 요금을 받고 나거나 특수 요금약정을 국장이나 대리인과 체결한 이후에만 복구된다. 재연결하기 위해 전체 체납료와 함께 시의회 결의안으로 결정된 요금을 납부하고, 앞으로 요금 납부를 보장하기 위한 특수 보증금을 요구할 수도 있다.

(t) 시는 웹사이트와 캘리포니아 수도자원통제국에 주거용 납부 불능으로 인해 수도서비스가 중단된 연간 수치를 보고할 것이다.

(g) 고지서 미납으로 수도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만일 서비스가 켜지거나 개인이 켜는 것을 허가받은 경우, 계량기는 잠그게 되고 체납료에 추가로 시의회 결의안으로 정한 재연결 요금이 있게 된다. 만일 자물쇠가 부서지고 서비스가 켜지거나 개인이 켜는 것을 허가받은 경우, 계량기는 제거하고 수도서비스를 복구하기 전에 시의회 결의안으로 정한 금액으로 재설치와 재연결 요금이 부과될 것이다. 금액은 체납 고지서 요금에 추가적이다. (조례안. 2175 § 4, 2020; 조례안. 1849 § 9, 1993; 조례안. 1639 § 7, 1985; 조례안. 1498 § 1, 1979; 조례안. 1394 § 1, 1975; 이전 법규§ 7329)

### 14.12.250 미납으로 인한 중단 금지- 조건.

(a) 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체납계정의 미납으로 서비스를 중단하지 못한다 (1) 고객의 고지서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요청 혹은 요금에 대한 논쟁이 대기 중인 경우

2) 후속 청구주기마다 요금이 누적되면서 고객이 계정을 현상태로 유지하는 조건 하에 고지서 납부기간의 연장이 허가된 경우

(b) 불법적으로 중단된 서비스는 복구비용 없이 복구되어야 하며 복구 기록을 고객의 청구서 발송 주소로 보내야한다. (조례안. 2175 § 5, 2020; 조례안. 1970 § 4, 2000; 조례안. 1639 § 8, 1985; 조례안. 1394 § I, 1975; 이전 법규§ 7330)

#### 14.12.260 조건의 준수.

수도사용의 조건으로 규정된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다음 통지서 절차에 따라 수도를 공급받고 있는 고객의 모든 서비스가 끊어진다. 수도사용의 조건으로 규정된 구체적인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통보하고, 10일 안에 준수하지 않은 사항을 정정한다. 준수하지 않은 사항을 정정하지 않은 경우 추가 통보없이 수도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책임자나 책임자들은 일반 재연결비용에 추가로 시의회 결의안으로 규정된 금액의 재연결 특수요금을 부과한다. 만일 자물쇠가 망가지고 서비스가 켜지거나 주인이나 소비자가 켜게 되면, 계량기는 제거하고 수도서비스를 복구하기 전에 시의회 결의안으로 정한 금액으로 재설치와 재연결 특수요금이 부과될 것이다. (조례안. 2175 § 6, 2020; 조례안. 1849 §10, 1993; 이전 법규 § 7331)

#### 14.12.270 체납료 책임.

(a) 수도요금, 요금, 계정의 집행과 수금을 위하여 본문에서 규정한 구제책에 추가적으로, 이 조항에서 규정한 모든 미납요금은 수도를 공급받는 건물이나 계정에 이름이 나온 고객에게 불리하다.

(b) 만일 어떤 이유로, 이 규정으로 부과된 수도 미납액이 체납되면, 시가 관할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계정에 이름이 나온 고객이 본문에 규정된 벌금과 비용과 함께 납부만기된 미납액에 책임이 있다. 이 규정의 목적으로만, 수도서비스 미납요금은 청구일로부터 30일 내에 전액 완납하지 않고 시와 납부약정을 맺지 않은 경우에 체납된다.

(c) 매년 6월 1일, 시 행정관이나 대리인은 매년 4월 13일에 끝나는 기간동안 건물주가 고객인 경우 서비스 연장에 대한 체납료 명단을 작성할 것이다.

(d) 시는 체납 공청회를 하기 전에 각각 체납과 관계있는 고객에게 최소한 45일 이전에 통지서를 줄 것이다.

(e) 시의회는 매년 6월에 두번째 회의인 통지한 공청회 일정을 정하게 되며 수금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후 7월 1일에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균등한 추정대장에 벌금과 체납료를 올리게 된다. 정부법 6066항에 의해 공청회 통지서를 만들것이다.

(f) 따라서, 벌금과 체납료를 시와 기타 조세당국을 대신하여 수금한 일반세금과 같이, 따로 하지 않고, 동시에 같은 사람이 동일한 방식으로수금할 것이다. 이 관의 조항은 고객이 토지주거나 선취권 허가계약서를 이행한 체납료에 해당될 것이다.

(g) 민사채무. 본 조항으로 부과된 요금과 벌금은 요금과 벌금이 적용된 계정의 고객이 시에 빚진 민사채무이다. (조례안. 2175 § 7, 2020; 조례안. 1849 § I 0, 1993; 이전 법규§ 7332)

#### 14.12.280 재산세 선취권 절차.

본문에서 규정한 구제책에 추가적으로, 고품폐기물 수거와 수도 합산요금을 빚진 체납이 발생한 후, 본 법령의 6.08.070항에서 규정한 바에 의해 시는 건물주에게 수수료와/혹은 요금을 수금할 수 있다. (조례안. 1849 § 11, 1993)



### 14.12.290저소득층 고객 - 정의.

이 조항의 목적상, “저소득층” 고객은 다음을 의미한다.

(a) 다음 내용의 현재 수혜자:

(1) 복지와 제도법 11200-11526.5항에 파악된 캘리포니아 직업기회와 어린이 책임 프로그램 혜택 (캘웍스)

(2) 복지와 제도법 1 8900-18928항에 파악된 캘프레시,

(3) 복지와 제도법 17000-17030항에 파악된 일반지원프로그램 혜택.

(4) 복지와 제도법 14131항에 파악된 메디칼 프로그램 혜택

(5) 복지와 제도법 12000 항에 파악된 보충보장소득(SSDI)/주정부 보조수당프로그램 혜택

(6) 복지와 제도법123275-123355항에 파악된 여성, 유아, 어린이를 위한 캘리포니아 특수보충영양프로그램 혜택

(b) 연간가구소득이 연방빈곤수치의 200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입주자 (조례안. 2175 § 8, 2020)

### 14.12.300 통지서.

(a) 체납료 통지서. 시는 계정의 체납료 미납으로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며, 시에서 유틸리티 고객의 건물에 사는 성인에게 말이나 문서로 체납과 임박한 중단 통지서를 먼저 준 경우는 예외이다. 시는 유틸리티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납부하기 위해 고지서를 우편으로 보낸 날짜로부터 적어도 30일까지 고객에게 시간을 줄 것이다. 체납료 통지서에 다음 내용이 나와야 한다. :

(1) 고객의 이름과 주소

(2) 체납료 금액

(3) 유틸리티 서비스 중단을 피하기 위한 요금납부금이나 납부약정 날짜

(4) 고객이 체납료를 납부하기 위한 시간 연장을 신청하는 기간과 방법

(5) 고객이 고지서를 항의할 수 있는 기간과 방법

(6) 고객이 유틸리티 서비스 체납료에 관한 상환납부일정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과 방법

(7) 고객이 시의 라이프라인과 유틸리티 사용자의 면제 플랜을 신청하는 기간과 방법

(8) 만일 시에서 유틸리티 서비스를 끊은 경우, 유틸리티 서비스를 복구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b) 최종 해지 통지서. 고객이 납부약정의 약관을 준수하지 않거나 본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시에서 판정할 때, 시는 “최종해지통지서”를 건물에 눈에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 고객에게 송달할 것이다. 시는 중단하기 최소한 5일전에 고객에게 통지서를 주지 않고 서비스를 중단하지 못한다. 이 통지서로 고객이 시의 추가 조사를 받을 자격을 받지 않는다.

(c) 이 조항에 의해 통지서를 발급해도 시에서 주거용 수도서비스를 중단할 의무는 없다.

(d) 이 조항에 의한 통지서는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타갈로그, 베트남어, 한국어, 서비스지역에 사는 주민의 최소한 10퍼센트가 사용하는 기타 언어로 제공될 것이다. (조례안. 2175 § 9, 2020)

### 14.12.310 통지서 송달.

(a) 본 법규에서 규정한 통지서는 시가 미납으로 인해 유틸리티 서비스를 중단하기 전에 7일 영업일 이후 개인배달이나 일급우편으로 송달한다. 다른 방법은, 시가 중단하기 최소한 7일 전에 서비스 중단에

관하여 전화나 대면 연락하여 유틸리티 고객의 건물에 사는 성인에게 연락하는 합리적인 시도를 하는 것이다.

(b) 만일 고객의 주소가 유틸리티 서비스를 공급받는 건물 주소가 아니면, 통지서는 유틸리티 서비스 장소로 보내고, “입주자” 앞으로 보낸다.

(c) 만일 통지서가 배달 불가능으로 돌아오거나, 시가 고객이나 주택에 입주한 성인과 전화로 연락이 안되면, 시는 유틸리티 서비스를 공급받는 건물에서 눈에 잘 보이는 장소에 통지서와 이 법규의 복사본을 게시해야 한다.

(d) 공공 유틸리티법 10010.1(c)항에 의해 시는 65세 이상 고객, 혹은 복지제도법 15610(b)(I)항에 정의된 성인 부양가족이면 고객은 제3자 통지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고객이 제3자를 정하면, 시는 법규에 따라 통지를 받아볼 수 있게 고객이 정한 사람에게 통지할 것이다. 주거용 고객은 시가 규정한 양식에 제3자 통지요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정해진 제3자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제3자에게 통지하여도 제3자는 체납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고 서비스 해지를 막거나 연기할 의무도 없다. (조례안. 2175 § 10, 2020)

#### 14.12.320 체납료 통지서 항소권.

(a) 고객은 체납료 통지서를 송달하고 10일 이내에 시서기에게 항소요청서를 제출하여 체납료통지서를 항소할 수 있다. 항소요청서는 다음 내용이 나와야 한다.

- (1) 체납료 통지서를 항소하는 각각 고객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 (2) 유틸리티 서비스를 제공받는 건물 주소
- (3) 항소하는 통지서 날짜
- (4) 국장이 분쟁의 성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항소에 관한 충분하고 자세한 근거
- (5) 최소한 항소인 한 명의 서명

(b) 시서기가 제때 항소를 받지 못하면 체납료 통지서의 항소권을 기권한 것으로 성립한다. 이때, 체납료 통지서는 최종적이고 법적구속력이 있다. (조례안. 2175 § 11, 2020)

#### 14.12.330 연장과 기타 별도납부약정.

(a) 만일 고객이 정상납부기간에 고지서 요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만일 고객이나 고객의 세입자가 다음 상황이면, 이 조항에서 규정한 별도납부약정이나 연장을 요청해도 된다. (1) 수도서비스를 공급받는 건물에 사는 거주자가 수도서비스 중단으로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있거나 생명이 위험하다는 주치의사의 인증서를 (복지제도법 14088(b)(I)(A)항에 정의된 용어) 시에 제출한다. (2) 건물 거주자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시의 정상청구주기에 수도서비스 요금을 납부할만한 형편이 안된다고 증명한다. 그러한 요청은 중단통지서에 나온 서비스 중단의 날짜와 시간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국장이나 대리인이 요청서를 검토하게 된다. 국장은 요청서를 검토하고 고객의 납부능력, 과거 납부기록, 납부금액을 재고하여 12개월이 넘지 않게 연장이나 별도납부약정을 허가할 수 있다. 이 조항에 의한 판정은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타갈로그, 베트남어, 한국어, 서비스 지역에 사는 주민의 최소한 10퍼센트가 사용하는 기타 언어로 문서를 만들고 고객에게 제공하게 된다. 요청하여 국장이 불리한 판결을 내리게 된 고객은 시 행정관이나 대리인에게 5일 내로 판결을 항소할 수 있다. 시 행정관의 판결은 최종적이 된다.

(b) 연장. 만일 국장이 승인하면, 고객의 미납액 납부는 잔액의 원래 납부마감일로부터 6개월이 넘지 않는 기간까지 임시로 연장된다. 국장이나 대리인은 고객에게 제공한 연장기간을 결정하게 된다. 고객은 국장이 정한 날짜까지 총 미납액을 납부하고 후속 청구주기에 누적된 수도서비스 요금을 전부 현상유지해야 한다.

(c) 할부상환. 만일 국장이 승인하면, 고객의 미납액을 국장이나 대리인이 결정한 12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으로 할부 상환해도 된다. 만일 할부상환이 승인되면, 미납잔액은 할부상환기간의 개월수로 나누어지고, 완납할 때까지 고객의 월 수도요금에 그러한 금액을 더하게 된다. 할부상환 기간동안, 고객은 후속청구주기에 누적되는 수도요금을 전부 현상유지해야 한다.

(d) 별도납부일정. 만일 국장이 승인하면, 국장이나 대리인이 결정한 12개월을 넘지않는 기간동안 고객이 미납액을 별도납부약정에 따라 납부해도 된다. 만일 승인되면, 별도납부약정에서 시에서 정한 납부일과 겹치지 않는 주기적 일괄납부금을 허용하고 시의 일반납부일보다 더 자주 혹은 덜 자주 납부하는 것을 허용한다. 별도납부약정 기간동안, 고객은 후속청구주기에 누적되는 수도요금을 전부 현상유지해야 한다

(e) 요금 수정. 국장의 재량에 따라, 고객이 빚진 수도서비스 미납요금을 할인받을 수도 있다. 국장은 할인요금의 허용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이다.

(f) 불이행. 만일 고객이 이 조항에 의해 국장이 허가한 납부약정을 불이행하거나 현재 수도서비스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원래 금액이 60일 이상 체납되면, 시는 수도서비스를 중단할 수도 있다. 시는 서비스를 중단하기 최소한 5일 전에 서비스 주소에 눈에 잘보이는 장소에 최종 해지통지서를 게시할 것이다. 이 통지서로 고객이 시의 조사나 재고를 받을 자격이 생기지 않는다. (조례안. 2175 § 12, 2020)

#### 14.12.340 저소득층 고객.

이 법규에서 파악된 저소득층 고객에 대해, 시는 건강안전법 116914항을 준수해야 한다. (조례안. 2175 § 13, 2020)

#### 14.12.350 추가 고객 권리- 임대 고객.

다음 조항은 유틸리티 서비스를 공급하는 건물의 주거용 입주자와 주인, 관리인, 혹은 운영자끼리 집주인-고객 관계인 경우 해당된다.

(a) 건강안전법 17008항으로 규정된 바에 의해 시가 분리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모빌홈 파크, 노동캠프의 영구적 주거물에 서비스를 공급하고, 시에서 주인, 관리인, 운영자가 기록상 고객이면, 시는 유틸리티 계정 체납과 유틸리티 서비스 해지일에 관하여 유틸리티 서비스를 해지하기 전에 최소한 10일까지 주거용 입주자에게 통지서를 주는 성실한 노력을 해야한다. 통지서에서 체납계정에 납부만기된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이 서비스를 청구받고 고객이 될 권리가 있다고 주거용 입주자에게 알려준다.

(b) 만일 입주자가 서비스 약관에 전부 동의하고 시의 규칙과 규정요건에 부합하면, 시는 실제 주거입주자에게 서비스를 사용하게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한 명 이상 입주자가 시가 만족할만큼 계정의 후속요금에 대한 책임을 인수받을 의사가 있고 능력도 있거나, 혹은 만일 시의 규칙과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입주자에게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물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이 있으면, 시는 요건에 부합한 입주자에게 서비스를 사용하게 할 것이다.

(c) 시의 고객이 되고 임대료 등 주기적 요금납부에 주거용 수도서비스요금도 포함되는 입주자는, 만일 그런 요금이 별도로 나오지 않으면, 이전 납부기간동안 시에 납부한 합리적인 서비스 요금을 납부기간마다 주기적 납부금에서 공제해도 된다.

(d) 분리된 단독주택인 경우, 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안한 중단일로부터 최소한 7일전에 최종 해지통지서를 준다.

(2) 체납된 계정의 만기금액을 면제받으려면 기록상 체납된 계정의 고객이 과거나 현재 건물의 집주인, 관리인, 에이전트라고 입주자가 증명해야한다. 입주자의 임대를 증명하기 위해 국장이 만족할 만큼 증거를 제시하여 증명한다. (조례안. 2175 § 14, 2020)

#### 14.12.360 신용도.

보증금을 내지 않으려면, 유틸리티 서비스 계정을 만들려는 사람은 신용을 쌓아야 하며, 다음 기준에서 한 가지에 따라 자격이 생기면 신용을 쌓게 된다.

(a) 신청인이 시에서 현재 유틸리티 고객이고 새 유틸리티 계정을 신청하기 바로 전에 연속 12개월동안 미납으로 임시 중단이나 영구 중단된 적이 없이 서비스 고지서 요금을 전부 납부하였다.

(b) 신청인은 지난 2년동안 시 유틸리티 고객이었다고 지난 연속 12개월동안 미납으로 임시 중단이나

영구 중단된 적이 없이 공급받은 서비스에 대한 고지서 요금을 전부 납부하였다.

(c) 유틸리티 서비스의 공급을 시에서 요청받은 건물을 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다. 혹은 기타 로컬 부동산의 소유주다. 만일 신청인이 상업용 계정을 개통하려고 하면, 서비스를 공급받을 사업체가 부동산을 반드시 소유해야 한다.

(d) 주거용 서비스 신청인은 신청인의 현재 고용주가(군대 포함) 2년 이상 계속 고용해왔고, 혹은 연금으로 은퇴하였다.

(e) 신청인은 유틸리티 서비스 고지서의 요금 납부를 보증하기 위해 시 검사가 만족하는 방식으로 보증인을 제공하였다.

(f) 신청인은 시가 합리적으로 만족할만큼 신용을 쌓았다. (조례안. 2175 § 15, 2020)

### 14.12.370 보증금.

(a) 시는 고객에게 유틸리티 요금납부를 보증하기 위하여 시에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b) 국장이나 대리인은 상당히 유사한 건물에 관하거나 혹은 공급하는 건물에 기록상 월 평균 고지서요금의 최고 3배까지 보증금을 정할 수 있다. 서비스가 중단되고 고객의 유틸리티 고지서 미납요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지 않고 보증금을 고객의 계정에 크레딧으로 처리한다. 시에 남은 보증금 잔액은 보증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이자없이 돌려주게 된다.

(c) 기록상 건물주 혹은 기록상 건물주의 승인서가 있는 신청인은 현금보증금을 대신하여 국장이나 대리인이 규정한 방식으로 선취권 허가약정을 맺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하여, 해당되는 정부건강안전법에 의해 시의회의 지도에 따라서, 시는 이 법령의 조항으로 부과한 체납료나 요금을 이자와 벌금을 포함하여 각각 건물주의 다음 세금고지서에 포함하여 카운티 회계감사관이 수금하고 매년 이체하는 권한이 있다는 점에 신청인과/혹은 기록상 건물주가 동의한다. 다른 방법으로, 체납료나 요금에 관하여 시의 명의로 소송을 관할권 법정에서 시작해도 되며, 만일 이 법령에 의해 시 혹은 시의 대리인이 부과되고 만기된 요금의 수금을 집행하기 위해 법적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시에게 유리하게 나온 판결을 시나 시의 대리인의 합리적인 변호사비용을 포함하여 발생한 소송비용에 포함시킬 것이다. (조례안. 2175 § 16, 2020)

[모빌 버전](#)을 보십시오.